

Ⅱ - 53	제 목	사망에 의한 승계시 변경신고 여부		
회신일자	2005년 9월 22일	회신방법	산자부 사이버민원실	
의 요 지				
질의1)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을 보면 공사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신고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승계신고를 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대표자변경)를 또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승계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질의2) 상속인의 경우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행정상으로는 자동으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이 경우 상속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승계를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행정관청에 별도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은 상속인에게 공사업에 대한 의무 및 권리가 자동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만일의 경우 상속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9조에 의한 폐업신고를 상속인이 대신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폐업신고를 안하고 공사업 대표자가 사망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사업이 등록취소 또는 폐업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내 용				
답변)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사망한때 상속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하며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기간내에 공사업자가 사망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인 당해 시·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